

「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」 심사보고

제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
제2차 본회의 (2004. 9. 17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4. 9. 7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9. 7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32호)
- 다. 2004. 9. 14 : 제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(건설과장 강상민)

가. 제안이유

-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(법률 제7188호, 2004. 3.11 공포, 2004. 6. 1시행)과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8407호, 2004. 5.29. 공포, 2004. 6. 1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원회의 기능
 - 가)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 - 나)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 - 다)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
 - 라)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등
- 2)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3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
- 4)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·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
- 5)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정리 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

- 6)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
- 7) 사천시 안전대책 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을 폐지

다. 법적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(지역위원회) 제4항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가. 동 조례 안은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(법률 제7188호 2004. 3. 11 공포) 및 같은 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8404호 2004. 5. 29 공포)이 제정되어 2004. 6. 1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

- 같은 법 제11조(지역위원회)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과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
- 같은 법 부칙 제4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)의 규정에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토록 하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는 자치단체조례 제정 시기를 명시하고 있음.

나. 동 조례 안은 소방방재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준칙(안)에 의거 우리시의 환경, 지역여건과 재난 등 각종 안전관리대상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안을 편제하였으며,

다. 조례안의 입법체계 및 절차, 상위법령과의 관계, 추진상의 효율성, 예산의 수반여부,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4.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 의		답 변	
질의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진삼성 위 원	○ 기존 안전대책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, 위원수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또는 개편한다는 것인지? ○ 대책과 관리의 차이점은?	건설과장 강상민	○ 근거법령이 폐지 또는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상위법규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로,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임. ○ 대책은 사고가 발생 또는 예측될 경우를 말하며, 관리는 조례안 제2조의 기능에서 정하는바와 같이 각종 안전 및 재난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과 계획 등의 심의 조정하는 기능으로 보면 될 것임
최연조 위 원	○ 위원수가 시장, 부시장을 포함하여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 등 예산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인원이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문적인 인사 위주로 구성하면 안 되는지? ○ 위촉된 명단이나 대상자가 있는지? 위촉 후 설명을 요함.	건설과장 강상민	○ 종전은 자연재해위주의 대책이었으나 동 조례 안은 자연재해는 물론 인위적인 재난과 화재 각종안전사고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해당 유관 단체를 비롯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코자하며 ○ 안에 열거된14명 외 위원장이 위 기준에 의거 위촉 할 것이며 위촉 후 별도 보고.
이연성 위 원	○ 안 제3조1항14호에 읍·면·동에 서 각종 재난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리·통장 중 대표성을 지닌 지역민방위대장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?	건설과장 강상민	○ 안 제14조(위임규정)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위원장이 정할 때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임.

5. 주요 토론요지

- 읍·면·동의 리·통장이 지역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읍·면·동의 대표자격으로 리·통장 협의회장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

종합적으로 심층 토론

- 읍면동장이 지역민방위대장 총괄 지도감독

- 읍면동의 지역안배 차원에서 위원 위촉 가능성 여부 등

○ 조례안의 제2조(위원회의 기능)에서 정책이나 계획의 심의 및 총괄·조정이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등으로 주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심의·조정·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지역민방위대장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

○ 토론 결론 : 전원 원안 가결의견 동의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